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학교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질환의 특성별 ‘군(群)’별로 구분되어 있는 현행 감염병 분류체계를 감염병의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신고시기 등을 중심으로 한 ‘급(級)’별 분류체제로 개편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534호, 2018. 3. 27.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학교에서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이 공유해야 하는 감염병 유형을 관련법률에 맞춰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감염병 분류체계 변경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22조의2제2항)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 분류체계의 변경(군(群)에서 급(級)으로 변경)에 따라 새롭게 변경된 용어로 관련규정을 현행화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기관과 협의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 예고(2022.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대통령령 제 호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5호에 따른 제4군감염병”을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감염병 예방대책의 마련 등) ① (생략)	제22조의2(감염병 예방대책의 마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4조의3제4항에서 “감염병 발생 현황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제4군감염병이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국내에 유입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경우 해당 감염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② ----- ----- ----- -----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 ----- -----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6541